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11명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 5명, 검사 6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12명”을 “2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4명”을 “9명”으로, “5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7 중 총계 “23,078”을 “23,089”로, 일반직 계 “23,059”를 “23,064”로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“5”를 “10”으로, 검사 계 및 검사 “19”를 각각 “2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연구위원)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, 그 밖에 형사정책,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.	제18조(연구위원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3명 ----- -----.
②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, 5명은 검사로 보하고,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교수·부교수·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·검사·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.	②----- 9명 ----- ----- ----- 11명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7]

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54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·	·	·	
총 계	<u>23,078</u>	<u>23,089</u>	+11
일 반 직 계	<u>23,059</u>	<u>23,064</u>	+5
·	·	·	
·	·	·	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	<u>5</u>	<u>10</u>	+5
·	·	·	
·	·	·	
검 사 계	<u>19</u>	<u>25</u>	+6
검 사	<u>19</u>	<u>25</u>	+6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2